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 산 검 사 의 건 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회

차 례

I. 결산검사 의견서	1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3
III. 결산검사 결과	3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3
2. 세입 결산	4
3. 세출 결산	6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7
5. 예비비 지출	7
6. 다음연도 이월	8
7. 기금 결산	8
8. 재무제표	9
9. 결산서의 첨부서류	11
10. 성과보고서	12
11. 금고 검사	13
IV.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14

I . 결산검사 의견서

강원도교육감 귀하

2023년 5월 1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의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도교육청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첨부한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홍 성 기	홍성기
위 원	이 한 영	이한영
위 원	박 윤 미	박윤미
위 원	김 명 규	김명규
위 원	김 문 정	김문정
위 원	김 태 영	김태영
위 원	박 광 석	박광석
위 원	박 상 희	박상희
위 원	황 규 선	황규선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 장부의 확인 및 증빙 자료 대조, 분석·검토, 금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 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강원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천 8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4조 6,374억 5천 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5,347억 4천 3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27억 1천 4백만원입니다.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456억 7천 6백만원(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272억 4백만원, 계속비이월 184억 7천 2백만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16억 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4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결산 총괄 현황 및 잉여금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세계잉여금)	비 고
예 산 액	4,604,087	4,604,087	0	
예산현액	4,629,628	4,629,628	0	
결 산 액	4,637,456	4,534,743	102,714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세계잉여금 (A=B+C+D+E)	이 월 내 역(B)				보조금 반납 예정액 (C)	지방채 상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02,714	45,676	0	27,204	18,472	1,609	0	55,428

2. 세입결산

-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천 8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6,413억 4천 7백만원, 수납액은 4조 6,374억 5천 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9%입니다.
- 불납결손액은 1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율은 0.0%이고,
주요 발생내역은 지난연도수업료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 미수납액은 38억 7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0.1%이며,
주요 발생 내역은 자산임대수입, 제재금수입, 지난연도수입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C)	C/B	금액(D)	D/B	금액(E)	E/B
합 계	4,629,628	4,641,347	4,637,456	99.92	13	0.00	3,878	0.08
이전수입	4,457,511	4,463,779	4,463,779	100.00	0	0.00	0	0.00
중앙정부이전수입	4,023,528	4,023,977	4,023,977	100.00	0	0.00	0	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9,894	435,710	435,710	100.00	0	0.00	0	0.00
기타이전수입	4,089	4,091	4,091	100.00	0	0.00	0	0.00
자체수입	85,454	90,906	87,015	95.72	13	0.01	3,878	4.27
교수학습활동수입	1	10	1	9.04	9	90.96	0	0.00
행정활동수입	400	364	364	100.00	0	0.00	0	0.00
자산수입	19,706	21,009	20,830	99.15	0	0.00	179	0.85
이자수입	5,400	6,544	6,544	100.00	0	0.00	0	0.00
기타수입	59,948	62,980	59,277	94.12	4	0.01	3,698	5.87
기타	86,663	86,663	86,663	100.00	0	0.00	0	0.00
전년도이월금	81,385	81,385	81,385	100.00	0	0.00	0	0.00
금융자산회수	5,278	5,278	5,278	100.00	0	0.00	0	0.00

초과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액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 초과수입	449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초과수입	5,812
비법정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감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초과수입	4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초과수입	2
자체수입	이자수입 및 자산수입 초과수입	1,561
계		7,828

3. 세출결산

-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천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 5,347억 4천 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6억 7천 6백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16억 9백만원과 집행잔액 476억원을 합한 492억 9백만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의 1.06%입니다.
- 세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부 문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4,629,628	4,534,743	45,676	49,209	97.95	0.99	1.06
	유아및초중등교육	1,580,616	1,507,219	45,409	27,988	95.36	2.87	1.77
	인적자원운용	27,302	24,970	0	2,332	91.46	0.00	8.54
	교수학습활동지원	447,493	421,267	15,772	10,454	94.14	3.52	2.34
	교육복지	176,333	175,099	0	1,235	99.30	0.00	0.70
	보건급식	156,911	154,030	1,351	1,529	98.16	0.86	0.97
	학교재정지원관리	357,105	356,530	0	576	99.84	0.00	0.16
	학교시설여건개선	415,473	375,325	28,285	11,862	90.34	6.81	2.86
	평생교육	9,253	8,917	98	238	96.37	1.06	2.57
	평생교육	9,253	8,917	98	238	96.37	1.06	2.57
	교육일반	1,224,163	1,216,900	170	7,093	99.41	0.01	0.58
	교육행정일반	104,456	99,669	0	4,787	95.42	0.00	4.58
	기관운영	68,225	65,761	170	2,294	96.39	0.25	3.36
	재무활동	1,051,482	1,051,470	0	12	100.00	0.00	0.00
	예비비	12,963	9,941	0	3,022	76.69	0.00	23.31
	예비비및기타	12,963	9,941	0	3,022	76.69	0.00	23.31
	인건비	1,802,633	1,791,765	0	10,868	99.40	0.00	0.60
	인건비	1,802,633	1,791,765	0	10,868	99.40	0.00	0.60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이 용		전 용		이 체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0	0	2	49,079	5	929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액은 5건에 97억 4천 4백만원이며,

○ 예비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세부사업	사용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지출사유
	합 계	9,906	9,744	0	162	
	안전담당관	8,360	8,359	0	1	
	학교보건관리	8,329	8,328	0	1	오미크론 상황 대비 키트 지원 등 긴급 대응
	교직원복지지원	3	3	0	0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관련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학생안전관리	28	28	0	0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관련 학생·유가족 심리상담 및 장례 지원
	총무과	1,547	1,385	0	162	
	교육정책기획관리	280	118	0	162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선거관리	1,267	1,267	0	0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으로 선거관리경비 추가 납부

6. 다음연도 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14건, 456억 7천 6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629,628	114	45,676	0	0	59	27,204	55	18,472	0.99

7. 기금 결산

-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총 4개이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1조 5,714억 4천 7백만원입니다.
- 기금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1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21,504	1,049,943	1,049,943	0	1,571,447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67	1,119	1,119	0	3,2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337	511,325	511,325	0	1,030,662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0	50,000	50,000	0	50,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87,498	487,498	0	487,498

8. 재무제표

가. 총괄

(단위: 백만원)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A)	비 용 (B)	운영차액 (C=A-B)
5,603,864	42,782	5,561,082	4,683,804	3,474,682	1,209,122

나. 재무제표 요약

1) 재정상태표

- 강원도교육청 총 자산은 5조 6,038억 6천 4백만원이며,
부채가 427억 8천 2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610억 8천 2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자 산		부채와 순자산	
자산 총계	5,603,864	부채와 순자산 총계	5,603,864
유 동 자 산	1,708,685	부채 총계	42,782
투 자 자 산	42,215	유 동 부 채	9,026
유 형 자 산	3,846,434	장 기 차 입 부 채	33,620
무 형 자 산	1,138	기타비유동부채	136
기타비유동자산	5,392	순 자 산 총 계	5,561,082
		고 정 순 자 산	3,805,878
		특 정 순 자 산	1,575,439
		일 반 순 자 산	179,764

2) 재정운영표

- 강원도교육청 총 수익은 4조 6,838억 4백만원, 총 비용은 3조 4,746억 8천 2백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091억 2천 2백만원으로 재정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수 익		비 용	
수익총계	4,683,804	비용총계	3,474,682
운영차액			1,209,122
이전수익	4,583,216	인적자원운용	24,951
자체수익	1,878	교수학습활동지원	344,134
기타수익	98,710	교육복지	175,108
		보건급식	142,362
		학교재정지원관리	356,530
		학교시설여건개선	92,552
		평생교육	7,247
		교육행정일반	81,544
		기관운영	16,103
		재무활동	3,152
		인건비	1,791,765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39,234

3) 순자산변동표

- 강원도교육청 기말순자산은 5조 5,610억 8천 2백만원으로 순자산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고정순자산(A)	특정순자산(B)	일반순자산(C)	기말순자산 (D=A+B+C)
3,805,878	1,575,439	179,764	5,561,082

9. 결산서의 첨부서류

가. 채권·채무 결산

- 202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36억 7천만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 채권 및 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채 권	55,467	△1,797	40,012	41,809	53,670
채 무	0	0	0	0	0

나. 공유재산 결산

-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65억 5천 8백만원이며,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 말 현 재 액
		계	증가	감소	
합 계	5,874,124	152,434	221,147	68,713	6,026,558
행정재산	5,768,217	152,780	200,953	48,173	5,920,997
일반재산	105,907	△346	20,194	20,540	105,562

다. 물품 결산

- 202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01억 6백만원이며,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3,998	79,796	578	309	1,659	7,141	1,081	6,831	14,576	80,106

10. 성과보고서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연도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도 130% 이상)	달성 (달성도 100%이상)	미달성 (달성도 100%미만)
2022	5	18	77	2	53	22
			100%	2.60%	68.83%	28.57%

11. 금고 검사

-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금액과 금고 증빙서의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 현황

(단위: 원)

총 수 입	총 지 출	잔 액	비 고
4,637,456,327,600	4,534,742,772,850	102,713,554,750	2023.1.20.자 기준

IV.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번호	개선 권고사항	소관부서(협조부서)	비고
1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2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	행정국 예산과 (보조사업 담당 부서)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 개선	행정국 행정과 (전 부서)	
4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불일치 및 측정산식 적합성 제고	행정국 예산과 (전 부서)	
5	동일목적 편성 예산 집행효과 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요구	정책국 안전복지과	

1.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 현 황

-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 적용대상: 유치원 기간제교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특수교사 기간제교사,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초·중·고 기간제교사
- 적용기준
 -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중 지급기준일(계약일) 현재 동일 직종의 경력이 1년 이상이 되는 자(동일 직종의 경력만 전체 합산하여 정규교원, 공무원, 군경력 등은 제외함)
 - 기간제교사 전체 경력이 1년 미만이거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적용기간(계약기간)” 중 맞춤형복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복지점수 부여
 - 기본 복지점수: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900p)
 - 근속 복지점수: 채용일 기준으로 동일 직종의 경력기간 1년에 10점 배정(최고 20년까지 최대 200p 배정)
 - 가족 복지점수: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정점수	100p	1인당 100p	· 첫째자녀 100p · 둘째자녀 200p · 셋째 이상 자녀 300p

- 출산축하 복지점수: 계약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자녀기준	첫째자녀 출산	둘째자녀 출산	셋째자녀 이상
배정 점수	1,000p (100만원)	3,000p (300만원)	5,000p (500만원)

- 난임지원 복지점수: 난임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 중 1인 1회(500p)에 한하여 배정
- 태아·산모검진 복지점수: 임신(출산 포함)시 1회(100p) 배정

○ 복지점수의 관리

-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채용일(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여
- 연장계약일 경우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계약시점(연장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여(계약서마다 복지점수 부여)
- 복지점수 계산방법: 소수점 이하 절사, 월할계산방식(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교사에 해당)

□ 문 제 점

- 가족복지점수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자에게 부여하는 바,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1년 단위보다는 1년 미만의 계약이 훨씬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불합리함.
예) 1년 2학기 계약시(6개월+6개월) ⇒ 가족복지점수 미부여
-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시간제강사 등 해당 교육청 산하 기관(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근무연수를 정하지 않고, “동일 직종”에 한하여 산정함으로써 일부 기간제교사의 불만 표출

□ **근 거**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

□ **개선 권고사항**

- 기간제교사 가족복지점수 배정에 있어 고용기간에 따라 불평등이 없도록 운용하시기를 권고함.
- 「동일 직종」에 한하여 복지점수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가능하다면 정규교원, 공무원, 군경력을 제외한 해당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기간제교사, 전임강사, 시간제강사 등)은 기간제교사 전체 경력에 포함하시기를 권고함.

□ **소관부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2.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

□ 현 황

- 민간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실적 분석, 성과 평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가. 년도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별	사 업 수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2020	193	2,664,656	2,056,562	608,094	
2021	136	2,861,333	2,650,012	211,321	
2022	173	3,073,990	2,920,907	153,083	

나.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분야별	문화예술	학업증진	미래교육	환경분야	통일교육	독서교육
지 원 액	374,854	150,000	160,740	62,200	40,000	26,400
예산대비 비율(%)	12.2	4.9	5.2	2.0	1.3	0.9
분야별	학생행사	성인지	교육문화	평생교육	돌 봄	학력미인정
지 원 액	32,784	60,000	26,239	430,013	238,000	118,118
예산대비 비율(%)	1.1	2.0	0.9	14.0	7.6	3.8
분야별	마을학교	언론기관	스포츠지원	기 타	합 계	
지 원 액	189,880	684,420	278,104	202,238	3,073,990	
예산대비 비율(%)	6.2	22.3	9.0	6.6	100	

- '22회계년도 보조사업 추진 성과분석은 7월말 까지인 관계로 '21회계년도 보조사업 추진 성과 평가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보다 빠른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수립(2022. 12월)으로 보조사업자들의 사업정산서 작성이 예년에 비해 탁월한 수준으로 상승되어 추후 강원도교육청의 민간보조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됨.

□ 문 제 점

- 2022년 보조사업자들로 부터 제출받은 정산 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지역을 달리하는 유사 사업의 실적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보조사업자는 그 집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예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춘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횡성지회)
-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60% 정도의 집행잔액을 회계연도 말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있음.
- 다양한 체험을 전제로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실시가 매우 중요하나 미 실시 하는 보조사업자가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시간을 활용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 됨.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운영지침」

□ 개선 권고사항

- 민간 보조사업은 공공보조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의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년 1회 이상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제출된 서류 상만의 평가가 아닌 현장 평가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참조하여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함.

- 각 사업 보조사업의 추진 성과 평가 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 성과를 도출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하여 연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함.
- 각 부서에서는 매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보조사업 추진 성과 평가분석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함.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받아 사업 변경 유도 및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과다 금액의 불용액 발생 방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함.
- 각 보조사업 담당자 인사 이동 및 보조사업자 변동 시 관련 사항 전파 및 교육을 수행하여 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함.

□ 소관부서 : 행정국 예산과(보조사업 담당부서)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 개선

□ 현 황

-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절대액으로는 476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
 - 예산 절감에 기인한 잔액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잔액 발생도 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도 상당액에 달함
- 집행잔액 476억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9억 원(16.2%)

<집행잔액 발생 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계	4,629,627,619,420	4,534,742,772,850	47,599,744,570	7,686,319,570
본청	3,731,659,867,610	3,682,784,358,370	25,662,086,590	4,345,128,250
직속기관	52,173,032,000	49,894,530,080	2,156,339,620	243,146,810
교육지원청	845,794,719,810	802,063,884,400	19,781,318,360	3,098,044,510

□ 문 제 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취소 등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
- 희소한 재원을 다른 유용한 사업에 투입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큰 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개선 권고사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 방지
- 철저한 사업관리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소관부서 : 행정국 행정과(전 부서)

4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불일치 및 측정산식 적합성 제고

□ 현 황

-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 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202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히 작성되어 있음
 -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구성이 짜임새 있게 잘 구성
 -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사항까지 도출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됨
- 또한, 목표 미달성 사업이 28.6%에 달해 보다 심도있는 목표 미달성 사유 파악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성과 달성도〉

(단위 : 개,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5	18	77	2 (2.6)	53 (68.8)	22 (28.6)

□ 문 제 점

- 일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정합성이 맞지 않음.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부합도가 낮아 성과측정의 실효성이 낮음.
- 성격상 동일한 측정내용(만족도)이나, 측정산식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음.
-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거나,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전년대비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사례가 있음.

- 측정산식이 성과목표 측정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음.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개선 권고사항

-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정합성을 높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부적합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보완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성과목표 미흡의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류(feed-back)함으로써 동일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소관부서 : 행정국 예산과(전 부서)

5. 동일목적 편성 예산 집행효과 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요구

□ 현 황

-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분담금을 예산 편성하여 매년 지출하고 있지만, 이미 같은 목적의 사업 예산이 각 시·군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도교육청의 예산은 특정 시·군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형태로 집행하고 있음.

□ 문 제 점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각 시·군에서 기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일 목적의 사업 예산을 도교육청에서도 지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 운영 및 관리는 전부 위임된 형태로 진행되고, 도교육청의 역할은 예산지출의 소관으로써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12년 체결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근거로 예산의 지속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의 당사자간 협의가 없으면 일방 파기가 불가능한 조항이 있어 일방의 결정으로는 예산집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개선 권고사항

- 2022년 수행한 “연계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점검 보고”를 근거로 사업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반안을 강구하여 기존 협약에 대한 사업 지속수행 여부를 검토 및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정책국 안전복지과